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

- 1)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1항제1호	500
나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1항제2호	500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0조제1항제3호	500
라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	법 제30조제2항	250